

2024년 11월 1일

1 November 2024

# 2024년 11월 자전거 '주행중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처벌 규정 강화! '취기 운전'은 처벌 규정 신설!

2024년 11월 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자전거 이용 중에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주행중 스마트폰 사용 (ながらスマホ)'에 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처벌 대상에 '자전거 취기 운전'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취기 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취기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 취기 운전을 방조한 자에게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을 자전거 사고에서 지키기 위해 운전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①자전거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 에 관한 처벌 강화, '취기 운전'에 관한 처벌 신설!

## 자전거 이용 시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처벌 규정

2024년 11월부터 자전거 이용 시 정지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거나 화면을 보는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이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며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보는 것 외에도 자전거에 부착한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것도 금지됩니다.

## 금지 사항

-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행위.(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
-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행위.

※두 행위 모두 자전거 주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는 제외함.

## 현행 처벌 내용

- 5만원 이하의 벌금

## 2024년 11월 부터 실시되는 처벌 내용

### 자전거 이용 시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 벌금

### 자전거 이용 시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 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 질서에 위협을

#### 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취기 운전, 방조에 관한 처벌 규정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만취 운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취기 운전'(혈중1mL 당 0.3mg이상 또는 호흡 1L 당 0.15mg이상의 알코올을 체내에 보유하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자전거를 제공하는 행위(취기 운전 방조)도 금지합니다.

## 금지사항

-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
-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자전거를 제공하는 행위.
- 자전거 운전자가 취기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 자전거에 태워주기를 의뢰하여 동승하는 행위.

## 2024년 11월 이후 자전거 취기운전에 관한 처벌 내용

### 취기 운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자전거를 제공하여 그 자가 자전거 취기운전을 한 경우

자전거 제공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그 자가 취기 운전을 한 경우

주류 제공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자전거 운전자가 취기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 자전거에 자신을 태우도록 의뢰하여 동승하고, 운전자가 취기 운전을 한 경우

동승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알코올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는 '만취 운전'이라 불리며, 이는 이번 도로교통법시행 이전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런 운전도 금지합니다

위의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취기 운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운전 또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산을 쓴 채로 운전 (5만엔 이하의 벌금 등)

이어폰과 헤드폰을 사용하여 안전 운전에 필요한 소리 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 (5만엔 이하의 벌금 등)

2인 탑승

(5만엔 이하의 벌금. 광역자치단체 공안위원회 처벌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병진 운전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병진 가능(並進可)' 표시가 있는 경우 제외)